



##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도매업 부문용 임시 지침

이 문서를 읽고 하단에서 요약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15일 월요일 기준

### 목적

본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도매업 부문용 임시 지침 혹은 "도매업 부문용 코로나 19 임시 지침(Interim COVID-19 Guidance for Wholesale Trade)"은 도매업 부문 재개방 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돕기 위해 도매업체 관리자/운영자 및 직원, 계약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지침은 최소 요건일 뿐이므로 고용주는 자유롭게 추가 예방책을 제공하거나 제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본 지침은 주 재개방 1 단계 시행 중 가장 잘 알려진 공중 보건 관행에 기반하며, 이 지침을 기반으로 한 자료는 자주 바뀔 수 있으며, 자주 바뀝니다. 아래에 정의된 바와 같이 책임 당사자(Responsible Parties)는 도매업과 관련된 모든 지역, 주 및 연방 요구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책임 당사자는 최신 요건을 알고 도매업 및/또는 현장 안전 계획(Site Safety Plan)에 통합할 책임이 있습니다.

### 배경

2020년 3월 7일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주정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202호를 선포했습니다. 코로나 19가 뉴욕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확산되었습니다. 추가적인 확산을 최소화하려면 가능한 경우 개인 사이에 최소 6피트 이상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2020년 3월 20일, Cuomo 주지사는 모든 비필수 사업체에 사무실 내 직원 기능을 중단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202.6호를 발표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 ESD) 지침에 따라 규정된 필수 사업체는 대면 제한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가 발행한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과 지침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가능한 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받았습니다.

2020년 4월 12일, Cuomo 주지사는 필수 사업체에 직장에 있는 직원을 위한 안면 가리개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 202.16호를 발행했습니다. 안면 가리개는 업무 중 고객 또는 대중의 일원과 직접 접촉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2020년 4월 15일, Cuomo 주지사는 행정명령 202.17호를 발표하여 만 2세 이상이며 의학적으로 페이스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지 않을 때 코와 입을 마스크나 얼굴을 덮는 천으로 가려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2020년 4월 16일 Cuomo 주지사는 2세 이상이며 의학적으로 페이스 커버 착용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대중교통 또는 사적 이동수단을 이용하거나 임대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이동 중 코와 입을 가리는 페이스 커버를 착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202.18호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량에 승객이 있는 동안 코와 입을 덮는 안면 가리개나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대중 또는 민간 교통의 모든 사업자 또는 운전자에게 지시했습니다. 2020년 5월 29일, Cuomo 주지사는 행정명령 202.34호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얼굴 가리개 또는 마스크 요건을 지키지 않은 사업체 운영자/소유자에게 입장을 거부할 재량권을 주는 것입니다.

2020년 4월 26일 Cuomo 주지사는 데이터 중심의 지역 분석을 기반으로 뉴욕의 산업과 비즈니스를 단계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단계별 접근 방식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4일 주지사는 지역 분석 과정에서 코로나 19 신규 감염과 건강 관리 시스템, 진단 검사, 접촉 추적 능력을 포함한 여러 공중 보건 요인을 고려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2020년 5월 11일 Cuomo 주지사는 지역별 계량 분석 및 지표에 근거하여 재개 1 단계가 2020년 5월 15일 뉴욕의 몇몇 지역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필수 및 비필수 사업체는 깨끗하고 안전한 업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더하여 보건부가 발행한 지침과 명령을 계속해서 준수해야 합니다.

본 문서의 지침이 뉴욕주가 발행한 다른 지침 문서와 다를 경우 최신 지침이 적용됩니다.

## 뉴욕주 도매업체 활동 책임 기준

도매업체는 다음과 같은 최소 주 기준을 따라야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연방 요건,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질병관리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미 노동 직업 안전 및 건강 관리국(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의 최소 기준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본 지침에 포함된 주정부 기준은 주정부가 비상 사태를 철회 또는 개정하기 전까지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운영하는 모든 필수 및 비필수 업체를 포함한 도매업체에 적용됩니다. 도매업 시설 부지 소유자 또는 해당 부지 소유자가 지정한 다른 사람(모두 "책임 당사자")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지침은 사람, 장소, 절차인 세 가지 뚜렷한 범주로 정리되었습니다.

## I. 사람

### A. 물리적 거리 두기

- 책임 당사자는 실내에서 일하는 경우 점유 허가를 받은 특정 구역에서 감독자 제외 인력을 최대 점유율의 50%로 제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설이 핵심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하는 데 더 많은 직원이 필요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추가 완화 전략을 이용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간 항상 6 피트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핵심 업무 안전에 6 피트 이하의 거리가 필요한 경우(예: 무거운 물건 함께 쌓기, 청구서 서명)는 제외합니다. 6 피트 이하의 간격을 두어야 하는 경우 직원은 허용 가능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직원은 다른 사람이 갑자기 6 피트 이내로 접근할 경우를 대비하여 얼굴 가리개를 착용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코로나 19에 허용 가능한 얼굴 가리개는 입과 코를 모두 덮는, 천으로 만든 얼굴 가리개, 일회용 마스크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천, 일회용 또는 기타 직접 만든 얼굴 가리개는 업무의 성격상 주로 개인 보호 장비(PPE)로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 업무용 얼굴 가리개로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업무에는 N95 마스크 또는 기존 산업 기준에 맞는 기타 개인 보호 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미 노동 직업 안전 및 건강 관리국 지침을 따릅니다.
- 책임 당사자는 작업 공간/직원 휴식 장소를 사방에서 6 피트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조정하거나 그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사방(예: 나란히 앉을 때 및 서로 마주 볼 때)에서 6 피트 이상

떨어져야 하며 사용 후마다 청소 및 소독하지 않으면 작업대 또는 공간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작업대 또는 공간 사이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경우 얼굴 가리개를 제공하거나 플라스틱 보호벽 등 물리적 차단막을 공기 흐름, 난방, 냉방, 환기를 방해하지 않는 구역에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물리적 차단막을 사용하는 경우 미 노동 직업 안전 및 건강 관리국 지침을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 물리적 차단막 종류(예: 사무실 또는 창고 전체 작업대 사이)는 스트립 커튼, 플렉시 글라스 또는 유사 자재, 기타 불투과성 칸막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좁은 공간(예: 엘리베이터, 상업용 냉장고/냉동고, 차량, 직원실, 사무실)을 한 번에 두 명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해당 공간에서 모든 직원이 허용 가능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더라도 최대 공간 또는 차량 점유율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 명이 사용하도록 설계된 공간 또는 차량은 제외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안전 규약을 유지하는 동시에 가능한 한 환기를 자주 해야 합니다(예: 트럭 및 직원 출입구, 창문 가능한 한 자주 열기). 책임 당사자는 엘리베이터 대기 공간에서 모임을 방지하고 엘리베이터 점유율을 제한할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예: 계단 사용).
- 책임 당사자는 좁은 통로, 복도, 공간에 테이프나 표지판으로 화살표를 표시하여 양방향 유동 인구를 줄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역, 줄을 서는 구역,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구역(예: 출퇴근 카드 장소, 건강 검진 장소 등)에 **6 피트**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판을 게시하거나 표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시설 전체에 보건부 코로나 **19** 신호와 일치하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가 사업장 작업 공간 또는 장소에 맞게 표지판을 만드는 경우 보건부의 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신호는 직원이 다음 사항을 기억하도록 사용되어야 합니다.
  - **6 피트**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얼굴 가리개로 코와 입을 막으십시오.
  - 개인 보호 장비를 적절히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폐기하십시오.
  - 물리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르십시오.
  - 코로나 **19** 증상이 있거나 이에 노출된 경우 보고하십시오(보고 방법 포함).
  - 손 위생, 세척, 소독 지침에 따르십시오.
  - 적절한 호흡기 위생 및 기침 에티켓을 따르십시오.

## B. 폐쇄된 공간에서의 모임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한 대면 모임(예: 팀 모임, 일일 점검, 안전 회의)을 제한하고 질병관리센터 지침 "코로나바이러스 2019(코로나 19) 계획 및 대응을 위한 사업체 및 고용주용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Businesses and Employers to Plan and Respond to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에 따라 동영상 또는 화상 회의 등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동영상 회의 또는 화상 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개방되고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 회의를 열어야 하며 직원이 서로 **6 피트**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예: 의자에 앉는 경우 의자 사이 간격을 띄우고 한 의자씩 거르고 앉기).
- 책임 당사자는 화장실 및 휴게소 등 좁은 공간에서 적절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도록 해야 하며 신호 체계(예: 사용 중 표시)를 만들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할 수 없는 공간의 사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모임(예: 쉬는 시간, 식사 및 근무 시작/중지) 시 직원이 사회적 거리 두기(즉 **6 피트** 공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나누어야 합니다.

## C. 작업 공간의 활동

- 책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람 간 접촉 및 모임을 줄여야 합니다.
  - 현장에 필요한 직원만 있을 수 있게 제한하기,
  - 영업 시간 조정하기,
  -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지킬 수 있도록 현장 인력 줄이기,
  - 근무 시간 설계하기(예: A/B 팀, 출발/도착 시차),
  - 사회적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업무(예: 청구서 서명, 무거운 물건 함께 쌓기)보다 가능한 업무 우선시하기(예: 지게차 사용),
  - 예정된 작업에 시차를 두어 한 장소에서 여러 그룹 및/또는 팀이 일하는 것 피하기, 사용 중인 장소에 표지판으로 표시하기, 및/또는
  - 가능한 경우 활동을 나누어 사회적 거리를 지키고 동시에 같은 물건을 만지는 횟수 줄이기(예: 한 직원이 모든 포장하는 동안 다른 직원은 수축 포장하고 모든 박스 닫기, 또 다른 직원은 트럭에 짐 싣기).

## D. 이동 및 거래

- 책임 당사자는 비필수 방문자가 현장에 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픽업 및 배달을 위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능한 한 접촉을 제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배달 시 운전자가 차량 안에 머무는 비접촉식 배달 시스템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책임 당사자는 배달 직원에게 최소한 천 얼굴 가리개를 비롯하여 활동에 맞는 허용 가능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상품을 나르기(예: 트럭 짐) 전후 손을 소독해야 합니다(예: 물건을 싣기 전 손을 소독하고 모든 짐을 실은 후 다시 소독하기).
- 책임 당사자는 현장에서 상호 작용(예: 근무 종료 직원용 출구와 근무 시작 직원용 입구 지정)과 이동(예: 직원은 가능한 한 자신의 작업 공간을 떠나지 말아야 함)을 제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적절한 사회적 거리 두기 규약에 따라 예약 없이 진행되는 전시실 방문과 시연을 모두 중단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비예약 방문 불가 정책을 시행하십시오. 책임 당사자는 소매업자가 온라인 또는 전화로 주문하고 시설에 픽업하러 오기 전에 약속을 잡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비디오 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상품 검사를 수행하십시오.
  - 상품 검사 또는 상호작용이 필요한 경우 모든 당사자는 검사 및/또는 상호작용 전후에 손을 소독하고, 상품을 검사하고 만질 때 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 II. 장소

## A. 보호 장비

- 책임 당사자는 특정 업무 활동에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 외에도 허용 가능한 얼굴 가리개를 조달, 제작하거나 얻어야 하며 해당 얼굴 가리개를 직원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교체해야 하거나 방문자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얼굴 가리개, 마스크, 기타 필수 개인 보호 장비 비축량을 적절히 유지해야 합니다. 허용 가능한 얼굴 가리개는 천(예: 직접 바느질한 천, 간단히 자른 천, 반다나), 수술용 마스크, N95 마스크, 안면 보호대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얼굴 가리개는 사용 후 세척 또는 교체해야 하며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천 얼굴 가리개 및 기타 개인 보호 장비 유형에 관한 추가 정보와 사용 및 세척법에 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센터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 천 얼굴 가리개 또는 일회용 마스크는 철저한 얼굴 보호가 필요한 업무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N95 마스크는 천 또는 직접 만든 마스크로는 충분하지 않은 특정 도매업 활동에 필요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미 노동 직업 안전 및 건강 관리국의 해당 안전 장비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개인의 얼굴 가리개(허용 가능한 가리개)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하나 얼굴 가리개를 스스로 충족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지침은 직원이 소장한 보호용 가리개(예: 수술용 마스크, N95 마스크, 안면 보호대)를 추가로 착용하는 것을 막거나 책임 당사자가 업무 성격상 직원에게 개인 보호 장비를 추가로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직원은 미 노동 직업 안전 및 건강 관리국의 해당 기준을 모두 따라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지게차, 재고 확인 및 주문 장치, 안전 키트 등 물건 공유와 난간 등 공유 표면의 접촉을 제한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는 공유 물건이나 자주 만지는 표면을 접촉할 때 직원이 장갑(작업용 또는 의료용)을 끼거나, 사용 후 손에 손을 소독하거나 닦게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에게 개인 보호 장비를 어떻게 끼고, 벗고, 세척(해당하는 경우), 폐기하는지 교육해야 합니다. 이는 적절한 얼굴 가리개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B. 위생, 청소 및 소독

- 책임 당사자는 "[코로나 19 민간 및 공공 시설 청소 및 소독에 대한 지침](#)"(Guidance for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for COVID-19) 및 "[확산 방지](#)"(STOP THE SPREAD) 포스터를 포함하여 질병관리센터 및 보건부가 권고하는 위생 및 소독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청소 및 소독 구역, 날짜, 시간을 기록한 일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현장에 다음과 같이 손 소독 장소를 제공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 손 씻기: 비누, 흐르는 온수, 일회용 종이 수건.
  - 소독제: 최소 알코올 60%을 함유한 알코올 기반 손 소독제, 손 씻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장소에 비치.
- 책임 당사자는 손 소독 장소 근처에, 눈에 띄게 더러운 손은 비누와 물로 씻어야 하며 손 소독제는 효과가 없음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시설 주변에 개인 보호 장비 등 오염된 물건을 폐기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여러 사람이 자주 만지는 표면에 사용하기 적절한 청소 및 소독 제품을 제공하고 직원에게 해당 표면 사용 후 제조사의 설명에 따라 제품을 사용한 후 손을 소독하라고 권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해야 하며 많은 사람이 사용하여 위험성이 높은 장소와 자주 만지는 표면은 더욱 자주 청소 및 소독해야 합니다. 청소 및 소독은 철저하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최소 근무시간이 끝날 때마다 또는 매일, 필요한 만큼 자주 하십시오. 시설



청소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보건부의 "코로나 19 대비 공공 및 민간 시설의 청소 및 소독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for COVID-19)을 참조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화장실을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사용 빈도에 따라 더욱 자주 청소 및 소독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화장실 점유율을 줄여 거리 두기 규칙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최소한 직원이 작업 공간을 바꿀 때마다 또는 다른 직원이 해당 장비를 사용할 때마다 장비와 도구를 등록 소독제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독하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 보호국에서 코로나 19에 효과적이라고 인증한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등록 제품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 청소 및 소독 제품 또는 청소 및 소독이 안전을 위협하거나 물질 또는 장비를 손상시킬 경우, 책임 당사자는 사용 중 이용할 수 있는 손 소독 장소를 배치하거나 일회용 장갑을 공급하거나 해당 장비를 사용하는 직원의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노출 장소를 청소 및 소독해야 합니다. 이러한 청소 및 소독은 최소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 및 자주 만지는 표면(예: 공유 도구, 기계, 작업 공간, 차량, 난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자나 확진자가 나온 경우 "시설 청소 및 소독"(Cleaning and Disinfecting Your Facility)에 대한 질병관리센터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픈 사람이 사용한 공간을 폐쇄하십시오.
    - 영향을 받은 구역을 폐쇄할 수 있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운영을 중단할 필요 없습니다.
  - 외부 문과 창문을 열어 해당 구역에서 공기를 순환하십시오.
  - 24시간 후 청소 또는 소독하십시오. 24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 가능한 한 오래 기다리십시오.
  - 사무실, 화장실, 공유 공간, 공유 장비 등 아픈 사람이 사용한 모든 구역을 청소 및 소독하십시오.
  - 해당 구역을 적절히 소독한 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 아픈 사람과 가까이 접촉하지 않은 직원은 청소 및 소독 후 즉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접촉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보건부의 "공공 및 민간 시설 직원이 코로나 19 감염 또는 노출된 후 직장으로 복귀하려는 경우를 위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Returning to Work Following COVID-19 Infection or Exposure)을 참고하십시오.
  - 아픈 사람이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사용한 후 7일 이상 지난 경우, 추가 청소 및 소독은 필요하지 않으나 정기적 청소 및 소독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식음료를 공유(예: 뷔페 스타일 식사)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점심을 싸 오라고 권장해야 합니다. 또한 점심을 먹을 때 직원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 C. 단계적 재개방

- 책임 당사자는 생산 또는 업무가 정상 수준이 되기 전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재개방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재개방 시 변화에 적응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직원 수, 시간, 서비스 제공 고객 수를 제한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D. 의사소통 계획

- 책임 당사자는 주에서 발행한 산업 지침을 검토하고 이해한 후 시행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해당 지침, 훈련, 표지판 등 직원, 방문자, 고객을 위한 의사소통 계획을 만들고 직원에게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릴 수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웹페이지, 문자 및 이메일 그룹, 소셜미디어를 만드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III. 절차

#### A. 선별 검진 및 검사

- 책임 당사자는 의무 일일 건강 검진을 시행해야 합니다.
  - 검진은 가능한 한 직원이 출근하거나 근무하기 전 원격(예: 전화 또는 전자 설문)으로 하거나 시설에서 해야 합니다.
  - 검진을 완료하기 전 직원끼리 가까이 어울리거나 가까이 접촉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 최소한 모든 직원에게 질문하고, 가능한 경우 방문자에게 질문하여 검진하고 직원 또는 방문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 (a) 지난 14 일 동안 코로나 19 확진자 또는 코로나 19 증상이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가까이 접촉했는지,
    - (b) 지난 14 일 동안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았는지, 및/또는
    - (c) 지난 14 일 동안 코로나 19 증상이 있었는지.
- 코로나 19 관련 증상의 최신 정보가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센터의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Symptoms of Coronavirus)에 관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근무 중 또는 후를 포함하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경우 등 검진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뀌는 경우 즉시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한 일일 체온 검사는 평등 고용 추진 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또는 보건부 지침에 따르십시오. 책임 당사자는 직원 건강 정보(예: 체온 정보) 기록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감염 가능성 있는 직원 또는 방문자가 시설에 들어와 체온 확인 등 검진 활동을 하는 인력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센터, 보건부, 직업 안전 위생 관리국 규약을 잘 알며 고용인이 인정한 개인이 검진자를 교육할 수 있습니다.
- 검진자는 최소 마스크를 포함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받아 사용해야 하며 장갑, 가운 및/또는 안면 보호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선별 시 코로나 19 양성 판정이 나온 직원은 일터에 출입할 수 없으며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여 평가 및 검사를 받으라는 지침을 주고 집으로 보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검사 결과가

코로나 19 양성으로 나올 경우 해당 사례에 대하여 주 및 지방 보건부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직원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검사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보건부 지침을 참조해야 합니다. 보건부의 "공공 및 민간 시설 직원이 코로나 19 감염 또는 노출된 후 직장으로 복귀하려는 경우를 위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Returning to Work Following COVID-19 Infection or Exposure)에 코로나 19 의심자 또는 확진자인 직원 또는 코로나 19 확진자와 가까이 접촉했던 직원이 직장으로 복귀하려는 경우를 위한 절차와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활동, 지역, 근무 시간 또는 날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접촉의 중심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직원으로부터 질문지를 받고 검토했음을 증명할 의무가 있으며 직원 및 방문자가 차후 해당 질문지에 명시된 대로 코로나 19 관련 증상을 겪는 경우 집단 접촉 지점을 확인하여 직원 및 방문자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현장 안전 계획을 모두 계속해서 지킬 의무가 있는 현장 안전 감시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한 일터 또는 구역에서 다른 사람과 가까이 접촉했을 수 있는 모든 사람(직원, 방문자 포함)의 일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나 비접촉식 수단을 사용한 배달 인력은 제외합니다. 직원이 코로나 19 진단을 받을 경우 접촉자를 확인하고 추적하여 알릴 수 있도록 일지에 연락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주 및 지방 보건부의 접촉자 추적에 협조해야 합니다.

## B. 추적

- 현장에서 직원이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책임 당사자는 즉시 주 및 지방 보건부에 알려야 합니다.
- 직원 또는 방문자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책임 당사자는 주 및 지방 보건부에 협조하여 일터 내 모든 접촉점을 추적해야 하며 해당 직원이 처음으로 코로나 19 증상을 겪기 시작하거나 양성 판정을 받기(둘 중 먼저 일어난 것 기준) 48 시간 전에 시설에 출입한 모든 직원과 방문자에 대하여 주 및 지방 보건부에 알려야 합니다.
- 주 및 지방 보건부는 감염 및 노출된 사람을 감시하고 자가 격리 조치 등으로 이동을 제한합니다.
- 코로나 19 확진자와 가까이 접촉한 적 있다는 알림을 받고 추적 또는 기타 메커니즘을 통해 알림을 받는 사람은 알림을 받은 즉시 자신의 고용주에게 보고해야 하며 위에 명시된 규약을 따라야 합니다.

## IV. 고용주 계획

책임 당사자는 완료된 안전 계획을 현장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사업체 소유자와 운영자에게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할 계획을 만드는 과정을 안내하기 위해 사업체 재개방 안전 계획 견본을 제작했습니다.

### 추가 안전 정보, 지침, 자원 확인처:

뉴욕주 보건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웹사이트  
<https://coronavirus.health.ny.gov/>



질병관리센터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웹사이트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직업 안전 및 건강 관리국 코로나 19 웹사이트  
<https://www.osha.gov/SLTC/covid-19/>

[아래 링크에서 귀하가 본 지침에 따라 운영할 의무를 읽고 이해했음을 약속하십시오.](#)

<https://forms.ny.gov/s3/ny-forward-affirmation>